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사)한국음악협회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정관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는 정관 제4장 제18조 제4항에 의거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임원관리규정(이하 '본 규정')을 둔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협회 임원의 임기만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의 유고로 보 선해야 할 때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격) 임원 선출의 자격(선거권)은 본 협회의 본부 정회원(제1장 제1, 2조)과 각 지회 대의원 2명(지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본 협회 정관 제4장 제17조 제2항)

제4조(선거권) 선거권은 ①총회 전년도 기준 최소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총회 전년도로부터 1년 전 12월 31일까지의 정회원) ②임원선거 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제 2 장 임원선거 공고

제5조(임원선거 공고)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 일정은 본 협회 정관 제4장 제17, 18조에 의거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1. 후보자 등록 및 일정 공고 : 개표일 30일 전까지
2. 후보자 공고는 ①회의 개시 30일 전(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문서로 통지하거나, ②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정보통신매체(홈페이지, 이메일, 메시지 등) 등으로 공지하거나 통지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본 협회 정관 제4장 제20조(의결정족수)를 따른다.

제7조(총회 연기) 1. 국가적 재난이나 질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단, 국가나 지자체가 인정할 정도의 국가적 위기일 때에 한한다.)

2. 총회 연기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재난 상황 종료 후 한 달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정관 - 임원선거 관리규정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성과 시기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선관위 구성은 총회 개최일 15일 전으로 한다.
2. 선관위원장은 회장단이 선임한 부이사장으로 한다.
3. 감사 또는 이사 중 2인으로 한다.
4. 입후보자 측에서 추천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미 제출시는 제외한다.)
5.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처)장을 간사로 하며 그 외에 보조업무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권한) 선관위는 ①협회 정관 및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 ②후보자의 자격 적부심의, ③선거인 명부 작성, ④투표지 제작, ⑤투표장 완성, ⑥후보자의 부정행위 ⑦후보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⑧선거 부정에 대한 경고, 등록 취소의 결정, ⑨개표, 당선자 발표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해산) 선관위 및 선거관리 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종료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 4 장 입후보자

제11조(자격) 이사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이사장 후보자는 순수음악 전공의 정규 4년제 음악대학(학과) 졸업자
2. 이사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일 기준 1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
3. 이사장 후보자는 본 협회 임원(협회 정관 제3장 제10조 제1. 2. 3. 4항에 해당하는 자)을 역임한 자(단, 문화체육관광부 등재 이사직 4년을 성실히 수행한 자)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
 - ① 협회에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 하지 않은 회원
 - ② 후보 등록일 현재 회원의 의무(회비)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 ③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아 미납금을 한꺼번에 정산한 경우(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④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회원
 - ⑤협회 정관 제2장 제9조 3항 ①, ②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회원

제12조(등록) 이사장에 입후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준비서류는 ①후보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②졸업증명서, ③이력서, ④회비 완납증명서(입금 영수증), ⑤선거 공약(소견 포함) 및 프로필 이미지(협회 이메일로 제출)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파일(소정 양식)로 받아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는 직접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정관 - 임원선거 관리규정

협회로 제출한다.

2. 정회원 추천 날인 30인 이상 1부(소정 양식) (단, 국가적 질병,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날인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매체인 ①전화 녹취, ②이메일, ③메시지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다.)
3. 공탁금은 10,000,000원(일천 만원)으로 하며 공탁 후 어떤 이유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 (단, 선관위는 공탁금을 관리할 별도 계좌와 회계 항목을 만들어 선거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선거 후 잔여 경비는 협회 운영비로 환입한다.)
4. 위의 제1, 2, 3항을 입후보 마감일 17시까지 협회 사무국에 제출할 것

- 제13조(득표 활동)** 1.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경력과 소견 및 공약 사항 등을 제출받아 1회에 한하여 선거인단(회원)에게 홍보할 수 있다.
2. 홍보물 제작은 입후보자가 자유롭게 A4용지 2매(총 4면) 이내로 제작하되 제2항 외에 어떠한 홍보제작물도 제작·유포할 수 없다. (단, 선거인단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홍보는 가능하나 총 5회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은 문자를 제공한 입후보자에게 있다.)
 3. 선거기간 중 개인에게 금품, 음식, 화환, 화분 등을 일체 제공할 수 없다.
 4. 입후보자는 후보자 공고 이후부터 개표 1일 전 17시까지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호) 기호(번호)는 입후보자 등록순으로 부여한다.

제5장 선거 실시

제15조(구성) 총회는 협회 정관 제4장 제20조에 의거 개최한다.

1. 임원선거는 출석 선거권자의 직접선거로 무기명 투표한다.
2. 임원의 당선은 입후보자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 표를 획득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16조(의장) 총회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소견) 입후보자는 등록 순서에 따라 투표 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영상 및 ppt.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제18조(용지) 1.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검인한다.

2. 선관위는 총회장 입구에서 선거권자의 본인 명부에 날인하고 1인 1매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투표한다.

제19조(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표한다.

제20조(개표) 1. 개표는 선관위원장의 책임 아래 선관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 별로 득표를 집계하여 선관위원장이 본 협회 정관 제4장 20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정관 - 임원선거 관리규정

후 최다 득표자를 임시의장에게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2. 단일 후보일 경우 선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의장이 무투표 당선을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1. 임시 의장은 개표의 결과를 선관위원장으로 부터 접수하여 당선자를 공표한다. (단, 선거에 따른 모든 증거물은 6개월간 보관한다.)

제22조(상실) 임시 의장은 신임 이사장 당선발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효력) 이사장 당선자는 당선 공표 즉시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여 당일 총회 중 미결사항 및 기타 사항을 의장으로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이 적용될 시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제정일) 1962. 1. 27. 제정
- (제정일) 1963. 2. 18. 개정
- (제정일) 1966. 5. 13. 개정
- (제정일) 1972. 7. 10. 개정
- (제정일) 1976. 8. 10. 개정
- (제정일) 1980. 1. 8. 개정
- (제정일) 1982. 5. 28. 개정
- (제정일) 1985. 3. 3. 개정
- (제정일) 1986. 7. 24. 개정
- (제정일) 1987. 2. 27. 개정
- (제정일) 1991. 4. 6. 개정
- (제정일) 1995. 3. 30. 개정
- (제정일) 1998. 4. 9. 개정
- (제정일) 2007. 7. 31. 개정
- (제정일) 2015. 2. 16. 개정
- (제정일) 2016. 3. 24. 개정
- (제정일) 2020. 12. 16. 개정

본 규정의 심의축조는 2016년 01월 29일 본 협회 정기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심의축조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그 내용을 2020년 12월 16일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음악협회
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